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2.12.21)

조례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9
5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6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8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 라. 상정및의결일자 : 2012. 12. 14

2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2조제6호)
 -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 제4조제1항제3호
- 나.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함(안 제10조제2항 제1호)
 - 현행 : 월 3만원 ⇒ 변경 : 월 5만원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1) 자 ⇒ 사람

(2) ~한 때 ⇒ ~한 경우가. 군민자전거 사용료 징수에관하여 정함(안 제13조제3항, 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시정사항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0조에서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안 제11조, 안 제13조 등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

○ 자 ⇒ 사람

○ ~한 때 ⇒ ~한 경우

○ 이 개정 조례안은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 라. 상정및의결일자 : 2012. 12. 14

2. 제안이유

-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신청기한 및 부정지급에 대한 환수절차 규정을 두어 화장장려금 지원업무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호)
 - 제3조제1호 ⇒ 제3조제1호·제2호
- 나.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을 정함(안 제6조제1항)
 -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다. 환수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제2·항제3항)
 - (1)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등을 통지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발송 등 지속적으로 독촉
 - (2)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신청기한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업무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에서는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명확(확대)히 함.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망자 1구당 30만원 지원
 - **안 제6조**에서는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토록 명시.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로 2항과 3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화장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보완함
- 이 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의 지원기준을 일부 확대하고 신청기한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절차를 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 라. 상정및의결일자 : 2012. 12. 14

2. 제안이유

- 이장에게 지역 복지도우미로서 임무를 부여하여 증가하는 복지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이장의 기능을 행정 여건에 적합하게 하고,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장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장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2조)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나. 실비변상 추가 지원(안 제4조)

-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장에게 지역 복지도우미로서 임무를 부여하여 이장의 기능을 행정여건에 적합하게 하고,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장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이장의 업무 중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월20,000원 지급)
- 이 개정 조례안은 이장에게 복지도우미로서 업무를 부여하여 증가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 라. 상정및의결일자 : 2012. 12. 14

2.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1.11.25.)으로 미술 장식업무가 거창군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1. 11. 25), 공포(2011.11.26.)로 건축물 미술장식업무가 시·군 기초단위에서 시·도 광역단위 업무로 일원화
- 나.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2012.6.28.)가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절차, 사후관리, 설치금액산정

규정과 경상남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군단위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11.11.25.)으로 건축물 미술장식업무가 거창군에서 경상남도
로 이관되어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장, 제6장에서 규정
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
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 라. 상정및의결일자 : 2012. 12. 14

2.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군내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 관광 진흥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

나. 지원제외 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다. 관광안내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8조)

라.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군내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와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
되는 행사나 관광,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 및
각종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관광안내소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안내소 운영,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등 위탁대상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제정조례안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 라. 상정및의결일자 : 2012. 12. 14

2. 제안이유

-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충족을 위해 사무를 재분장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부서장의 사무를 분장 및 조정함(안 제3조, 제16조, 제22조)
 - 주민생활지원실
 - 사무이관 :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행정과
 - 사무신설 :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
 - 경제과

- 사무신설 : 에너지 자립도시 관련 업무
- 문화관광과
 - 사무이관 :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문화센터(⇒ 문화센터)
 - 사무이관 :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 사무이관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즈음하여 2010년 12월 조직 일제정비 후 일부 미흡한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며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무를 재분장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실·과의 설치)의 실장·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함.
 - 주민생활지원실장 분장사무 중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로 이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로 부터 인수하며
 - 행정과장 분장 사무 중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 경제과장 분장 사무 중 “에너지 자립도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문화관광과장 분장 사무 중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센터로 이관하고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센터로부터 인수하며

- 안 제2절에서는 “교육문화센터” 를 “문화센터” 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문화센터 소관사무 중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은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함.
 - 안 제3절에서는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를 “거창사건사업소” 로 명칭 변경하며
 - 안 제4절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 를 “체육청소년사업소” 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안 제22조에서는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사무 중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하고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을 주민생활지원실로부터 인수 함.
- 이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 라. 상정및의결일자 : 2012. 12. 14

2. 제안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6급 : 11% 이내(현행) → 12% 이내(조정 : 증 1%)
- 7급 : 25% 이내(현행) → 27% 이내(조정 : 증 2%)
- 8급 : 23% 이내(현행) → 18% 이내(조정 : 감 5%)
- 9급 : 41% 이상(현행) → 43% 이상(조정 : 증 2%)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8명
 - 현행 : 523명(본청227명, 의회7명, 직속기관86명, 사업소34명, 읍33명, 면136명)

- 조정 : 531명(본청239명, 의회8명, 직속기관85명, 사업소30명, 읍33명, 면136명)

○ 기능직 : 감5명

- 현행 : 57명(본청27명, 의회4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1명)
- 조정 : 52명(본청24명, 의회3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4명, 읍4명, 면1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 사무기능직의 경력경쟁 임용에 의한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652명” 에서 “655명” 으로 조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638명” 에서 “641명” 으로 조정함
- **안 제3조** 제2항 별표2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조정 하였으며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이내⇒ 12% 이내	25%이내⇒ 27% 이내	23%이내⇒ 18% 이내	41%이상⇒ 43% 이상

- **안 제4조의** 별표3에서는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를 652명 ⇒ 655명으로 3명 증원하고
- 본청 정원을 272명 ⇒ 280명으로 8명 증원하며

- 보건소 정원을 64명 ⇒ 63명으로 1명 감원 조정하고
 - 사업소 정원을 54명 ⇒ 50명으로 4명을 감원 조정함.
- 이 개정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채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 라. 상정및의결일자 : 2012. 12. 14

2. 제안이유

-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나.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로운군민업무 담당부서장, 군의원,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

다.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부상의 정도에 따라 2백만원 ~ 7백만원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라. 위로금의 환수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위로금을 수령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이나 “군 이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군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으로 하며 의로운 군민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규정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의로운 군민 선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의

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회의 등으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결정결과를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로운 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의로운 군민이나 가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과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군사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

등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로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 제정 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